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 취소공고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중인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1일 공고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공고를 취소 공고합니다.

1. 취소 사유

- 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0호 한들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2015. 1. 26)의 개발계획 내용이 기존(2011년 12월 1일) 개발계획의 내용과 상이하여 기존 집단환지 지정 신청을 취소.
- 나. 「도시개발업무지침」 4-3-2(개발계획수립전 6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 2007. 12. 14)에서 「도시개발업무지침」 4-3-2(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 2011. 12. 30)으로 규정 변경.

2. 취소 공고의 효력

- 가. 본 취소 공고로 2011년 12월 1일 공고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공고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신청한 집단환지 신청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 나. 무효가 된 집단환지 신청서는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반환하게 될 경우 조합에서 그 사본 1부를 보관합니다.
- 다. 기존(2011년 12월 1일 공고) 집단환지 지정 신청된 신청서는 무효 처리하기 때문에, 집단환지 지정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집단환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 07. 21.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 공고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중인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조합 정관」 제46조 규정에 따라 집단환지 지정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1. 대상사업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2. 신청대상 : 한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3. 신청기간 : 2016년 07월 21일 ~ 2016년 09월 18일 (60일간)
4. 신청방법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로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우편신청 시 조합사무실에 도착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함]
-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1로 55, 3층(백석동)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5. 제출서류 :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식
6. 결과통보 : 향후 신청자에게 개별통보 (대표자가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통보)
- 도시개발업무지침 4-3-3 및 조합정관 제46조 6항에 의거 통보
[금번 집단환지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의 총 권리면적이 환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집단환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토지를 우선으로 지정]
7. 신청조건
 - 가. 공유로 소유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함.
 - 나. 기타 사항은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와 공동주택지 집단환지 신청조건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8. 기타
 - 가. 집단환지 지정 신청 공고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및 조합사무실 게시판, 일간신문 공고로써 갈음함.
 - 나.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T. 032-565-6343) 바람.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 공고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중인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조합정관」 제46조 규정에 따라 집단환지 지정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1. 대상사업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2. 신청대상 : 한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3. 신청기간 : 2016년 07월 21일 ~ 2016년 09월 18일 (60일간)
4. 신청방법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로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우편신청 시 조합사무실에 도착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함]
-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1로 55, 3층(백석동)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5. 제출서류 :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식
6. 결과통보 : 향후 신청자에게 개별통보 (대표자가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통보)
- 도시개발업무지침 4-3-3 및 조합정관 제46조 6항에 의거 통보
[금번 집단환지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의 총 권리면적이 환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집단환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토지를 우선으로 지정]
7. 신청조건
 - 가. 공유로 소유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함.
 - 나. 기타 사항은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와 공동주택지 집단환지 신청조건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가. 집단환지 지정 신청 공고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및 조합 사무실 게시판, 일간신문 공고로써 갈음함.
 - 나.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T. 032-565-6343) 바랍니다.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 취소공고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중인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1일 공고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공고를 취소 공고합니다.

1. 취소 사유

- 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0호 한들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2015. 1. 26)의 개발계획 내용이 기존(2011년 12월 1일) 개발계획 의 내용과 상이하여 기존 집단환지 지정 신청을 취소.
- 나. 「도시개발업무지침」 4-3-2(개발계획수립전 6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 2007. 12. 14)에서 「도시개발업무지침」 4-3-2(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 2011. 12. 30)으로 규정 변경.

2. 취소 공고의 효력

- 가. 본 취소 공고로 2011년 12월 1일 공고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집단 환지 지정 신청공고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신청한 집단환지 신청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 나. 무효가 된 집단환지 신청서는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반환하게 될 경우 조합에서 그 사본 1부를 보관합니다.
- 다. 기존(2011년 12월 1일 공고) 집단환지 지정 신청된 신청서는 무효 처리 하기 때문에, 집단환지 지정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집단환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 07. 21.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